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철도역사 대합실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
■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091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세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철도역사 대합실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2

I. 개요

1.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09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민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24.
- (3) 회 부 일 : 2025. 4. 25.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 항공기, 선박 등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에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령에서는 이들을 제외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 2제1항제4호의2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철도역사 대합실의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비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철도역사 대합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7. (생략) ② ~ ⑤ (생략)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철도역사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5¹⁾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여객 항공기·공항, 철도객차, 선박, 공동주택 및 철도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²⁾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AED”)³⁾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6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①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편의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역사(「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구간에 있는 철도역사는 제외한다)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합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3천명 이상인 대합실
3.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 평균이용객수가 1천명 이상인 대합실
4.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시설 중 영업장의 전용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카지노 시설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6.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주장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외국인보호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2) 환자의 피부에 부착된 전극을 통하여 전기충격을 심장에 보내 심방이나 심실의 세동(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떨려 제대로 된 심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을 제거하는 제세동기를 자동화하여 만든 의료기기(구 자동제세동기)

□ 이에 따라 AED를 구비해야 하는 시설의 상세내역은 [표 1]과 같음.

[표 1] AED 의무구비시설의 유형 및 기준

유형	기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여객 항공기 및 공항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철도차량 객차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선박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공동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관광지·관광단지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되어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공공편익시설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다중이용시설	- <u>철도역사 대합실</u>(「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u>광역철도</u> 및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u>도시철도 구간</u>에 있는 <u>철도역사</u>는 제외,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명 이상)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3천명 이상) - 항만 대합실(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천명 이상) - 카지노 시설(전용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 경마장 - 경주장 -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관람석 5천석 이상) - 중앙행정기관 청사(「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 시·도 청사(17개 시·도 청사)

자료: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제1항, 「응급의료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보건복지부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

3)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는 AED 외에도 수동심장충격기 등이 있으나 의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보다 용이한 AED가 공공장소 등에 보편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본 검토보고에서도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가리키는 용어로 AED를 사용하기로 함.

□ 현행법령은 AED를 의무구비해야 하는 철도역사 대합실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및 이용객 수(전년도 일일평균이용객 수 1만 명 이상) 기준은 개정안과 동일하나,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는 개정안과 달리 의무구비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을 의무구비 시설에 새롭게 포함시키게 되어, 철도 이용자의 위급상황에 보다 원활하게 대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의 AED 의무구비를 법률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의 대합실은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른 AED 의무구비시설은 아니나 현재 상당수의 역사에서 자체적으로 AED를 구비하고 있음.

- 전국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의 AED 설치율은 86.9%임([표 2]).

* 모든 역사를 대상으로 산출한 설치율로, 개정안의 대합실 연면적 또는 이용객 수 적용 시 설치율은 증가할 수 있음.

[표 2] 전국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AED 설치현황

(단위: 개, 대, %)

권역	총 역사 개수(A)	AED 설치 역사 현황		AED 역사 설치율(B/A)
		설치 역사 개수(B)	AED 설치 대수	
수도권	806	694	941	86.1
부산	158	127	127	80.4
대구	101	100	146	99.0
광주	20	19	19	95.0
대전	22	22	23	100.0
계	1,107	962	1,256	86.9

주: 총 역사 개수는 전체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역사 개수의 합계임.

※ 대합실 연면적 또는 이용객 수 기준에 따라 구분된 수치가 아니므로, 개정안에 따라 AED 의무구비시설에 포함되는 역사 개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 도시/광역철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2025. 7. 조회 기준) <<https://station.kric.go.kr/v2/statistics/index.do>>

- 둘째, 현재 철도 역사 대합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AED 설치에 대한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에서 정하고 있어,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를 AED 의무구비시설에 포함하도록 동 규정을 개정할 경우 철도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가 충족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개정안 시행 전에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에 AED를 설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의 시행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⁴⁾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부칙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AED 의무구비시설을 확대하는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표 3]과 같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동 법안과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표 3] AED 의무구비시설 확대 취지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추가되는 AED 의무구비시설
2203226 (박주민의원)	'24.8.27.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204056 (인요한의의원)	'24.9.19.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AED 의무구비시설에서 AED를 설치한 경우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춘 경우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응급장비의 양도·폐기·이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추가되는 AED 의무구비시설
2206389 (임호선의의원)	'24.12.1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에는 응급대기실을 설치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구비
2208726 (이광희의원)	'25.3.7.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청사 및 지역축제*
2211159 (김재원의의원)	'25.6.30.	-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 공무원이 운용하는 경찰차

주: 해당 의무구비시설의 규모 등 상세한 기준을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법안에서 규정하는 경우 “*” 표기

자료: 각 법안을 바탕으로 작성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많은 사람이 이용 중인 광역·도시철도를 제외하고 일부 철도 대합실만 설치의무를 부여한 현행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다만, 현행 법령체계를 고려하여 법개정 보다 시행령 개정 검토 필요

- 현 시행령 규정에서 광역·도시철도를 제외하는 단서 삭제 시, 개정안과 문구 동일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법률의 개정 취지와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나, 현행 법령에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신중검토 필요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개정안에 동의하며, 법 제14조제1항⁵⁾에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받도록 명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1의2.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따른 구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철도역사 대합실에서
여객접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가할 필요

□ (대한의사협회) 본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철도역사 내
응급장비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문화한 것으로, 실제 적
용되는 내용의 변화는 크지 않음. 다만, 응급의료장비의 법적 설치
가 반드시 필요한 장소를 명확히 밝히고, 제도의 안정성과 장비
관리에 대한 관련 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AED 의무구비시설 확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 단체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
외에도 재정 지원, 교육 훈련, 장비 점검 등 후속 정책이 유기적
으로 연계되어야 할 것임.

□ (국토교통부·대한심폐소생협회) 의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509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
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
·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안전법」 제2조제14호 및 제17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
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
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참고】	사·도별 AED 설치 현황
------	----------------

구분	총 설치 대수(대)	인구 만 명당 설치 대수 (대)
전 체	71,693	14.0
서울	12,641	13.5
부산	4,090	12.4
대구	2,916	12.3
인천	4,369	14.6
광주	2,019	14.2
대전	1,917	13.3
울산	1,557	14.1
세종	722	18.7
경기	13,824	10.1
강원	2,737	17.9
충북	2,753	17.3
충남	3,629	17.0
전북	2,341	13.3
전남	4,984	27.6
경북	4,397	17.2
경남	4,258	13.1
제주	2,539	37.6

주: 1. 설치 대수는 2023년도 말 기준이며, 인구 수는 해당 연도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수 기준임.
 2. 설치 대수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의무구비시설 및 기타 의무는 아니나 자체 구비된 시설·장소에 설치된 대수의 총 합계임.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 2023 응급의료 통계연보, 2024. 10.